

□ 주요내용

가. 농산물 및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(별표 4중 (50), (373), 별표 5 중 (30))

- (1)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한 합리적 사용을 위해 잔류허용기준 개정
- (2) 피망 중 베나락실과 수박 중 스피로메시펜 및 수삼, 건삼, 홍삼에 대한 디메토모르프 기준 개정

나.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신설(별표 4 중 (4), (50), (85), (203), (285), (326), (337), (345), (370), (404))

- (1)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

준을 신설하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

- (2) 농산물 중 나프로파마이드 등 10종에 대한 기준 신설

다.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(별표 4 중 (405), 별표 5 중 (60))

- (1) 농약으로 새로 사용등록된 농약 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
- (2) 농산물 중 사이에노피라펜과 인삼 중 포세틸-알루미늄에 대한 기준 신설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232호, 2009. 8. 21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중 납,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, 잔류용매, 미생물 등 유해물질 규격을 신설·강화하고자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초산비닐수지 등 59 품목의 성분규격 제개정

- (1) 납, 카드뮴, 수은 등 유해중금속 규격 강화 또는 신설(Ⅱ. 제3. 가. 241, 321, 322, 323, 324, 325, 330,

- 331, 332, 333, 337, 339, 342, 343, 347, 348, 349, 356, 358, 359, 360, 361, 362, 363, 364, 365, 368, 370, 371, 373, 374, 375, 376, 381, 386, 388, 389, 390, 392, 393, 394, 395, 396, 399, 400, 402, 404, 405, 406,

- 407, 408, 409, 410, 411, 422, 423, 431)
- (2) 제조과정 중 잔류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, 불소화물 등 유해물질 규격 강화 또는 신설(II. 제3. 가. 321, 322, 325, 331, 347, 348, 356)
- (3) 세균수, 대장균, 살모넬라, 진균수 등

미생물 규격 신설(II. 제3. 가. 363, 364, 365, 422)

- (4) 아미드펙틴 신규지정(II. 제3. 가. 433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239호, 2009. 8. 28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식용유지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- 가.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(II. 1. 바)
 - (1) 식용유지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고시명을 “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”으로 변경

- 다.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 추가
- 라.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 실험 면제 조건 관련 규정 추가
- 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